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7] <신설 2024. 7. 31.>
 자동차폐차사원증(제139조제1항 관련)

(앞쪽)	(뒤쪽)
<p>자동차폐차사원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50px; height: 100px; margin: 20px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p>사진 (3cm × 4cm)</p> </div> <p>성명 표기</p> <p>업체명 표기</p>	<p>사원증 번호:</p> <p>유효기간:</p> <p>업체명:</p> <p>성명:</p> <p>생년월일:</p> <p>사업장 주소:</p> 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자의 종사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발급기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직인</p>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m ² 또는 플라스틱]	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m ² 또는 플라스틱]

비고

자동차폐차사원증의 성명, 업체명 및 뒤쪽의 사원증 번호 등은 다음의 글자크기 및 글자체로 표시해야 한다.

	성명 (앞쪽)	업체명 (앞쪽)	사원증 번호	유효 기간	업체명 (뒤쪽)	성명 (뒤쪽)	생년 월일	사업장 주소	발급 일자
글자 크기 (포인트)	13	13	9	9	9	9	9	9	9
글자체	헤드라인체		굴림체						